

# 기록관리교육 강사 수당 등의 지급규정

[제정 2008. 6.13. 국가기록원 예규 제3호]

[개정 2012. 2. 6. 국가기록원 예규 제6호]

[개정 2016. 3.11. 국가기록원 예규 제14호]

[개정 2016. 11.3. 국가기록원 예규 제15호]

## I. 강사료

### ① 지급대상자

- 기록관리 교육에 초빙한 내·외부강사

※ 기록관리교육센터(이하 '교육센터')에 근무하는 전임 교수요원 및 직원 제외

### ② 지급기준

- 강의시간 : 1시간 단위로 인정

- 강의시간 산출 :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,  
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

※ 단, 최초 1시간을 산출하는 경우, 30분 경과를 불문하고 1시간으로 산출

- 동일 강사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하는 경우

-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(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)

-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

-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(과목·강좌명)이 다른 강의

## ○ 강사 수당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기준		지급액 (만원)	지 급 대 상		
				공공분야	민간분야	
특강 (I)	최초 1시간		50	◦ 전·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◦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	
	초과	1시간	12.5			
		2시간이상	25			
특강 (II)	최초 1시간		40	◦ 전·현직 차관(급),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◦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자	
	초과	1시간	10			
		2시간이상	20			
일반 (I)	최초 1시간		30	◦ 전·현직4급이상,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특강이외 대학교수·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◦ 시민단체·기업·연구소 임원 등	
	초과	1시간	7.5			
		2시간이상	15			
일반 (II)	최초 1시간		20	◦ 전·현직 5급이하,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	◦ 시민단체·기업 직원, 연구소 연구원 및 이에 준하는 자	
	초과	1시간	5			
		2시간이상	10			
보조 강사	외부	최초 1시간		◦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자로,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		
		초과	1시간			1.5
			2시간이상			3
	내부	최초 1시간				3
		초과	1시간			0.75
			2시간이상			1.5
내부 강사	최초 1시간		6	◦ 기록관리 교육에 초빙한 국가기록원 직원 (기록관리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제외)		
	초과	1시간	1.5			
		2시간이상	3			

- ※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
- ※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[별표2]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
- ※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
- ※ 보조강사 수당은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%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
- 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 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

### ③ 초빙강사여비

- 강사여비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르되, 관례에 따라 일비·식비를 제외한 교통비 지급
- 원내 비전임 교수가 근무지의 출장·강의시 교육센터에서는 강사수당만을 지급하고, 출장비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
  - ※ 원내 비전임 교수요원은 출장비 이중수령 금지에 따라 강사수당만 지급
- 근무지내 강의시 교육센터에서는 강사수당지급
  - ※ 근무지내란 동일 건물내에서의 강의를 하는 것임

## II. 시행일

-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